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20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김태선·박 정·이재관
김영환·한민수·허 영
조계원·김영배·김병주
김용만·박균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강검진 시간이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건강진단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함

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2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건강진단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이하 “건강진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건강진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제62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2조의2(건강진단휴가) ① 사용자</u> <u>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u> <u>근한 근로자에게 연 1일의</u> <u>「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u> <u>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u> <u>건강진단을 위한 휴가(이하</u> <u>“건강진단휴가”라 한다)를 주어</u> <u>야 한다.</u> <u>② 사용자는 건강진단휴가를</u> <u>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u> <u>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u> <u>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u> <u>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u> <u>여야 한다.</u> <u>③ 건강진단휴가는 1년간 행사</u> <u>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u> <u>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u> <u>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u> <u>하다.</u>
<u>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u> <u>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u> <u>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u>	<u>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u> <u>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u> <u>부과한다.</u>

<u>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u> <u>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u> <u>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u> <u>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u> <u>다.</u> ② · ③ (생략)	<u>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u> <u>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u> <u>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u> <u>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u> <u>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u> <u>내 괴롭힘을 한 경우</u> <u>2. 제62조의2제1항 · 제2항을 위</u> <u>반한 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
---	--